李厚洛 발언기사의 무단 번역 波紋

韓勝憲
한국저작권연구소장 · 변호사

> 문제의 월간「新東亞」기사 전문을
> 일본의「中央公論」지가 한마디의 사전 양해도 없이 무단 번역해 게재했다.
> UCC 가입 후, 한국인의 저작권을
> 일본쪽에서 침해한 사건이 먼저 발생한 것은 분명히 好材였다.
> 이 사건은 뜻밖에도 나에게 작은 시련을 남겼다.

매달 20일이면 다음달 치 종합지들이 산뜻한 모습으로 책방에 얼굴을 내민다. 20일이라는 날짜가 무슨 吉日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쇄·제본시설의 형편상, 매달 초하루에 나오는 여성지나 대중지와 열흘 동안의 時差를 두고 있는 것뿐이다. 20일에 월급을 주는 직장이 많아서 구매력이 제일 좋을 때이긴 하지만, 그것도 반사적인 효과일 뿐이다.

그런데, 예정된 제 날짜에 잡지가 나오지 않아서 독자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일이 가끔 있었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그 내막을 대충 짐작할만큼 성숙(?)해졌다. 으레 잡지에 실린 글의 내용에 변통이 붙은 것으로 추리하기 마련이고, 대개는 그대로 맞아떨어지곤 하였다. 한국적인 언론통제 수법은 이미 정평이 나있었기 때문에 놀라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었다.

'6·29선언'이란 것도 그러한 정부의 과오를 시인하는 전제 위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는 맹세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 10월호「신동아」와「월간조선」이 당국의 제지로 제 날짜에 못나오는 불상사가 再演되었다. 왕년에 정보부장을 지낸 李아무개의 인터뷰 기사가 문제의 불씨였다. 李씨가 1973년의 김대중씨 납치사건에 관해서 한 말이 외교상 기밀과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정부는 우겼다. 해당 언론사는 이를 반박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등 거센 반발을 보였다.

이런 와중에서 나는 그중 한 신문사측의 자문에 응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후 정부가 후퇴하고 뒤늦게나마 잡지가 나오게 된 것은 모두 아는 바와 같다.

여기서 '상황'은 끝난 것으로 되었지만, 실인즉 나의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10월 열흘께라고 기억되는데,「신동아」의 간부 한 사람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일본의「中央公論」에 실린 글 한 편을 복사해 가지고 왔다.

사연인즉「신동아」의 이후락씨 인터뷰 기사 전문을 일본의「중앙공론」이 무단 번역하여 게재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市販되는「신동아」의 기사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있기 전의 오리지널(?) 기사의 번역이었다.

한 마디의 승락도 구하지 않고 번역 게재한 소행이 괘씸하여 무슨 조치를 해야겠는데 법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느냐는 문의였다. 우리 한국도 이제 세계저작권조약(UCC) 가입국이 되었으니만큼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UCC 가입 후에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의 글을 무단 번역했다가 말썽이 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저작권을 일본쪽에서 침해한 사건이 먼저 발생한데 대해서 자부심(?)같은 것을 느꼈다. 분명히 그것은 好材였다.

물론 나는「신동아」측의 견해가 옳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선「중앙공론」측에다 문서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쪽 사장의 명의로 저쪽 사장에게 보내는 격식을 단단히 갖춘 문서를 보내라고 일렀다.

일본측은 흔히 한국인들이 자기네의 책을 무단 번역해서 출판한다고 불평도 하고 비방도 해온 터인데, 이번에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데서 기분이 좋았다. 더구나 종전의 일본측 이야기와는 달리 이번의 우리쪽 항의는 조약상으로 근거까지 갖추고 있음에랴!

그러나 나의 그런 쾌재는 하루 밤이 지난 뒤에 무산되어 버렸다.

다 아는 바와 같이 UCC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날은 금년 시월 초하루이고, 소위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전에 나온 다른 체약국의 저작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문제의「신동아」10월호가 시판되기 시작한 날은 9월 28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사흘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약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날의 내 대답은 잘못된 것이었다. 지체없이「신동아」측에 알려 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얼마쯤의 자책을 씹고 있던 순간, 미처 생각못했던 구원(?)의 빛이 머리를 스쳤다. 일본 잡지에 실린 번역문은 국내에서 시판된「신동아」에 삭제되어 있는 부분까지 원형 그대로 실려 있다는 점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부분이 일본 잡지에는 실려나온 셈이다. 저작권법의 투로 말하자면, 미공표저작물을 자기네 맘대로 공표하였으니 그 대목은「신동아」의 공표권을 침해하였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비록 극소부분이긴 하지만 공표권, 즉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한 점은―「중앙공론」이 10월 이후에 발행되었다고 보아서―법적인 항의도 가능하다.

저작권 상담이란 과연 쉽지가 않다. 묻는 쪽에서는 나의 말을 무슨 전문가의 견해나 되는 듯이 알고서 받아들이기 쉬운데, 정작 내가 정확치 못한 의견을 말했다가는 '선 무당'이 되고 만다. 하물며 중태에 빠진 분규를 전화 한 통화로 시원한 처방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 예사 일이 아니다.

「신동아」의 이후락 인터뷰 기사는 뜻밖에도 저작권의 응용문제로 화하여 나에게 작은 시련을 남겼다.

原色 관상 조류총감
朴熙信 編著 한국조류사육 연구원 원장 부천조류원대표
■이 책의 특징
1.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관상조류의 종류를 총망라한 350종의 원색 사진을 154面에서술.
2. 각종 조류의 기초사육 지식과 전문사육 지식을 이론적, 체계적으로 서술.
3. 조류의학, 조류생태학, 조류유전학에 관한 전문지식 수록.
4. 모란 앵무새의 색채변이에 관해 상세히 서술.
5. 번식이 용이한 품종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 전문가, 초보자의 조류사육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필수 지침서!
■ 4×6배판·컬러 154面·본문 224面/13,000원
五星出版社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6가147-7 전화·634-9541~3

韓國佛教美術史論
황수영 편
한국불교미술의 전체적인 분야에서 그 동안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한 불교미술의 본격 논문집.
● 본문 320/사진 140/값 9,000원
民族社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

한국최초의 韓西사전
韓西사전
김충식 지음
● 풍부한 어휘, 풍부한 내용
● 활용본위·예문 중심의 실용사전
● 학생·이민자·무역실무자 필수사전
● 스페인어 작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 B 40/1160쪽/15,000원
도서출판 월출 서울 종로구 인사동 119-1 전화 735-6734

동보기획
표지디자인 · 본문편집 · 제작
120 서울·서대문구 미근동 142번지
3131-319